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용혜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295

발의연월일: 2024. 11. 6.

발 의 자:용혜인·이용우·김우영

임미애 · 이광희 · 위성곤

김준형 • 윤종오 • 한창민

백승아 · 문진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,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,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 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하면서,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는 연 평균 89.5%가 소방분야에서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어 업무체계가 이중화되어 있고, 이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.

또한,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 시·도 소방예산의 국비지원 비율은 12% 수준으로 매우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정책방향에 따라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 및 소방사업 투자가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변경하여 이를 소방청장이 교

부하도록 하고, 그 재원을 모두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분야의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3조 등).

법률 제 호
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"소방안전교부세"를 "소방교부세"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5호 중 "소방안전교부세"를 "소방교부세"로 한다.

제9조의4의 제목 중 "소방안전교부세"를 "소방교부세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"행정안전부장관"을 "소방청장"으로, "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, 안전관리 강화"를 "소방시설 확충"으로, "소방안전교부세"를 "소방교부세"로 하며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"소방안전교부세"를 "소방교부세"로, "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,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, 재단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"을 "소방시설 현황, 소방시설 투자 수요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소방안전교부세"를 "소방교부세"로 한다.

제9조의5 중 "소방안전교부세"를 "소방교부세"로 하고,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소방교부세의 경우 "행정안전부장관"은 "소방청장"으로 본다.

제11조제1항 중 "행정안전부장관"을 "행정안전부장관 및 소방청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행정안전부장관"을 "행정안전부장관 및 소방청장"으로 한다.

제12조 중 "행정안전부장관"을 "행정안전부장관 및 소방청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소방재정지원 및 시·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중 "소방안전교부세"를 각각 "소방교부세"로 한다. 제6조제1항제1호 중 "소방안전교부세"를 "소방교부세"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교부세의 종류) 지방교부세	제3조(교부세의 종류)
(이하 "교부세"라 한다)의 종류	
는 보통교부세·특별교부세·	
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	<u>소방교부세</u>
<u>세</u> 로 구분한다.	
제4조(교부세의 재원) ① (생	제4조(교부세의 재원) ① (현행과
략)	같음)
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	②
음 각 호와 같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소방안전교부세: 제1항제3호	5. <u>소방교부세</u>
의 금액 + 제1항제6호의 정	
산액	
제9조의4(<u>소방안전교부세</u> 의 교부)	제9조의4(<u>소방교부세</u> 의 교부) ①
① <u>행정안전부장관</u> 은 지방자치	<u>소방청장</u>
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, <u>소방</u>	<u>소방</u>
및 안전시설 확충, 안전관리 강	<u>시설 확충</u>
<u>화</u> 등을 위하여 <u>소방안전교부</u>	<u>소방교부</u>
<u>세</u> 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	<u>세</u>
부하여야 한다. <u>이 경우 소방</u>	<u><</u> 후단 삭제>
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	
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.	
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	②소방교부세
<u>세</u> 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	

의 소방 인력,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, 재난예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,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,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소반안전교부세 중 「개별소비세법」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한다.

제9조의5(관련 규정의 준용) 부동
산교부세 및 <u>소방안전교부세</u>의
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관한 조
치, 이의신청, 보고에 관하여는
제8조의2·제13조 및 제15조를,
특별교부세의 보고에 관하여는
제15조를 준용한다. <<u>수단 신</u>
설>

제11조(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) 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 단체가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부당하게 교부세를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경우

<u>소방시설</u>
현황, 소방시설 투자 소요
<u>소</u>
<u>방교부세</u>
제9조의5(관련 규정의 준용)
소방교부세
<u> </u>
소방교부
세의 경우 "행정안전부장관"은
"소방청장"으로 본다.
제11조(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)
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방청
장

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당 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 과하는 부분을 반환하도록 명 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(減額)할 수 있다.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 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 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 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 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 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 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감액하거나 반환 을 명하는 교부세의 금액은 법 령을 위반하여 지출하였거나 징수를 게을리하여 확보하지 못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③ · ④ (생 략) 제12조(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교부세 조정) 행정안전부장관 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 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·설치·분리·병합하는 경우 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

부할 교부세를 대통령령으로

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방청
<u> 장</u>
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
세12조(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
교부세 조정) <u>행정안전부장관</u>
및 소방청장

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다.

-----.